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96	소병훈의원	2026. 4. 13.	2026. 9. 11.
	2218326	안상훈의원	2026. 4. 14.	2026. 9. 11.
	2218940	이수진의원	2026. 5. 13.	2026. 9. 11.
	2219592	박성민의원	2026. 6. 29.	2026. 9. 11.
	2219842	남인순의원	2026. 7. 8.	2026. 9. 11.

나.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함(제21조제3항 신설).

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신청 시”를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간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원칙) ① (생 략)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4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② (생 략)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제6항----------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간주 ----------.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

1. ~ 3.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①·② (생 략)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 설>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설>	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